○ 양 천 구 의 회
○ 제29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신훈

2022. 6. 17.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2755호	검토	전문위원 신훈
의안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제출일자	2022. 6. 3.
소관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자	2022. 6. 3.

1 제안이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에 따라 환경근로자의 근골격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100L 봉투의 제작·공급을 중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가정용 폐기물, 사업장용 폐기물, 사업장용 압축폐기물 수거를 위한 100L 봉투의 제작·공급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1단계 판매가격은 삭제하여 현행 봉투 판매가격을 명확히 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2.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2. 4. 21. ~ 2021. 5. 11.)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성별영향 평가서 결과 : 원안동의.

4 검토의견

□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공무관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22년 1월) 사항을 반영하여 100L 봉투의 제작·공급 근거 조항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1단계 판매가격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환경부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받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9년 4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의 경우 100L 제작을 금지하였음. 이후 2022년 1월 시행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는 일반가정용 폐기물 종량제봉투에서도 100L를 삭제하고, 75L를 최대용량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함.

□ **종합의견**

○ 환경공무관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100L 봉투의 제작·공급 근거를 삭제하는 등 환경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표 1】과 같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된 1단계 판매가격을 삭제한 것은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음.

- 참고로, 2022년 1월 기준, 서울시내 다른 기초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100L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곳은 4곳뿐임.

【표 1】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별표 2])

현 행

[별표 2]

종량제봉투 가격

(제14조제3항관련)

구 분	용량	용도	가 격	
			1단계	2단계
일반 규격 봉투	2ℓ	일반가정용 폐기물	60	60
	3ℓ		80	90
	5ℓ		120	130
	10ℓ		220	250
	20ℓ		440	490
	30ℓ		660	740
	50ℓ	일반가정용 폐기물	1,100	1,250
		사업장용 폐기물	1,800	2,000
	75ℓ	일반가정용 폐기물	1,650	1,880
		사업장용 폐기물	2,700	3,000
	100ℓ	일반가정용 폐기물	2,220	2,500
		사업장용 폐기물	3,600	4,000
		사업자용 압축폐기물	6,050	6,730
재사용 봉투	3ℓ	일반가정용 폐기물	80	90
	5ℓ		120	130
	10ℓ		220	250
	20ℓ		440	490
특수 규격	10ℓ	불연성폐기물용	920	1,020
	20ℓ		1,840	2,040
	50ℓ		4,590	5,100

봉투				

※ 비고

1. 1단계 판매가격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단계 판매가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 정 안

[별표 2]

종량제봉투 가격

(제14조제3항관련)

구 분	용량	용도	가 격
일반 규격 봉투	2ℓ	일반가정용 폐기물	60
	3ℓ		90
	5ℓ		130
	10ℓ		250
	20ℓ		490
	30ℓ		740
	50ℓ	일반가정용 폐기물	1,250
		사업장용 폐기물	2,000
	75ℓ	일반가정용 폐기물	1,880
		사업장용 폐기물	3,000
재사용 봉투	3ℓ	일반가정용 폐기물	90
	5ℓ		130
	10ℓ		250
	20ℓ		490
특수 규격 봉투	10ℓ	불연성폐기물용	1,020
	20ℓ		2,040
	50ℓ		5,100

참고자료

○ 서울시 타 자치구 100L 제작 현황

(2022.1. 기준)

연번	자치구	계속 제작	미제작	비 고
합 계		4개구	21개구	
1	종 로 구	○		폐지 장기검토
2	중 구		○	2021. 1.
3	용 산 구		○	2020.11.
4	성 동 구		○	가정용은 50L가 가장 큰 용량, 영업용은 100L 2020.4부터 제작 중단
5	광 진 구		○	가정용은 50L가 가장 큰 용량, 영업용은 제작 중단 장기 검토
6	동대문구		○	2017. 1.
7	중 랑 구		○	2019. 1.
8	성 북 구		○	2020. 9.
9	강 북 구		○	2020. 7.
10	도 봉 구		○	2022. 1.
11	노 원 구	○		2020.7. 중량 제한 조례 개정
12	은 평 구		○	2020. 9.
13	서대문구		○	2021. 1.
14	마 포 구	○		
15	양 천 구		○	2021. 1.
16	강 서 구		○	2020. 9.
17	구 로 구		○	2021. 1.
18	금 천 구		○	2021. 5.
19	영등포구		○	2020.12.
20	동 작 구		○	2021. 1.
21	관 악 구		○	2020.10.
22	서 초 구		○	2020. 8.
23	강 남 구	○		
24	송 파 구		○	2021. 9.
25	강 동 구		○	2021. 1.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생 략)

② (생 략)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2.1. 발행본 발췌)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 수거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00L 봉투 제작을 금지**
-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
  - 일반용 봉투 용량 :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 75L를 최대용량으로 지정
  - 재사용 종량제봉투 : 3L, 5L, 10L, 20L, 30L
  - 공공용 봉투 용량 : 30L, 50L, 75L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 3L, 5L